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2569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5년 12월 18일
제 안 자 : 교육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안 제8조는 문언 해석상 공동구매에 대한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, 안 제11조(식생활 지도 등) 및 제12조(학교급식의 날 운영)는 급식운영과 조리종사원의 업무부담과 급식 위생 관리 측면에서 현장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이를 수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“안전한 식재료의 적정가격 구매 원칙”을 규정하고, “공동구매 단 구성”에 대한 부분은 삭제함(안 제8조).
- 안 제11조(식생활 지도 등) 및 안 제12조(학교급식의 날 운영)를 삭제함.

3. 참고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8조 중 “식재료”를 “안전한 식재료의 적정가격 구매를 원칙으로 하되, 식재료”로, “절감과 공동구매단 구성을 통한”을 “절감,”으로 한다.

안 제11조 및 안 제12조를 각각 삭제하고, 안 제13조 및 안 제14조를 각각 제12조 및 제13조로 한다.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8조(공동구매의 활성화) 교육감은 안전한 식재료를 적정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인근 학교들을 대상으로 공동구매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<신 설></p>	<p>제8조(공동구매의 활성화) 교육감은 식재료 구매 물량의 규모화로 인한 비용 절감과 공동구매단 구성을 통한 행정업무 경감을 위하여 인근 학교간 또는 지역 단위 공동구매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제11조(식생활 지도 등)</p> <p>학교장은 쾌적하고 위생적인 급식을 위하여 식생활교육관(식당)을 조성하고, 식생활교육관에서 학생과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식생활 관련 교육·지도 및 정보 제공, 영양상담, 급식 관련 체험활동 등을 실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교육감은 이에</p>	<p>제8조(공동구매의 활성화) ----- <u>안전한 식재료의 적정가격 구매를 원칙으로 하되, 식재료-----</u>-----<u>절감, -----</u>-----<u>-----</u>-----<u>-----</u>-----<u>-----</u>.</p> <p><삭 제></p>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<u><신 설></u></p> <p><u>제12조 · 제13조</u> (생 략)</p>	<p><u>필요한 경비를 예산</u> <u>의 범위에서 지원할</u> <u>수 있다.</u></p> <p><u>제12조(학교급식의 날</u> <u>운영) 학교장은 학생</u> <u>과 학부모의 학교급</u> <u>식에 대한 이해를 증</u> <u>진하고 참여를 유도</u> <u>하기 위하여 급식 참</u> <u>관, 시식회 등을 실시</u> <u>하는 학교급식의 날</u> <u>을 운영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제13조 · 제14조</u> (현 행 제12조 및 제13조와 같음)</p>	<p><u><삭 제></u></p> <p><u>제12조 · 제13조</u> (현 행 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 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 중 “학교장”을 “학교의 장(이하 “학교장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4조제2항제1호 중 “학교급식공급업자”를 “학교급식공급업자,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”로, “급식위생 · 안전”을 “위생 · 안전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급식위생 · 안전”을 “학교급식 위생 · 안전”으로 한다.

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8조(공동구매의 활성화) 교육감은 안전한 식재료의 적정가격 구매를 원칙으로 하되, 식재료 구매 물량의 규모화로 인한 비용 절감, 행정업무 경감을 위하여 인근 학교 간 또는 지역 단위 공동구매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교육감 등의 책무) ①·②(생략) ③ 교육감과 <u>학교장</u> 은 학교급식 운영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본청, 직속기관, 교육지원청, 학교에서 보유·관리하는 급식에 관한 정보를 학생과 학부모 등에게 공개하여야 한다. ④(생략)	제3조(교육감 등의 책무) ①·②(현행과 같음) ③ ----- <u>학교의</u> 장(이하 “ <u>학교장</u> ”이라 한다)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④(현행과 같음)
제4조(학교급식점검단의 설치) ①(생략) ② 점검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1. 학교급식 현장 및 <u>학교급식공급업체</u> 등에 대한 학교급식 <u>급식위생·안전</u> 점검 지원 2.·3. (생략)	제4조(학교급식점검단의 설치) ①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. 1. ----- <u>학교급식공급업체</u> , <u>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</u> ----- ----- <u>위생·안전</u> ----- ----- 2.·3. (현행과 같음)
제6조(점검단의 운영 등) ① 점검단은 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는 <u>급식위생·안전</u> 점검 및 급식소, 납품업체 등 유관기관 합동점검 등에 참여하여 활동한다. ②(생략)	제6조(점검단의 운영 등) ① ----- ----- <u>학교급식 위생·안전</u> ----- -----. ②(현행과 같음)
제8조(공동구매의 활성화) 교육감은 안	제8조(공동구매의 활성화) 교육감은 안

현 행	개 정 안
<p><u>전한 식재료를 적정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인근 학교들을 대상으로 공동구매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	<p><u>전한 식재료의 적정가격 구매를 원칙으로 하되, 식재료 구매 물량의 규모화로 인한 비용 절감, 행정업무 경감을 위하여 인근 학교 간 또는 지역 단위 공동구매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